

앵커사업단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 임용 특별 규정

제정 2025. 10. 21.

1차 개정 2026. 08.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단(이하 ‘앵커사업단’)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5.)

제2조(적용범위) 앵커사업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 「연구교수·연구원 임용 규정」과 구분하며, 앵커사업의 수행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앵커사업단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 임용 특별 규정」(이하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6.8.5.)

제3조(정의) 앵커사업단의 앵커연구교수 및 앵커연구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앵커 전임연구원 및 앵커 객원연구원을 모두 ‘앵커 연구원’이라 한다.(개정 2026.8.5.)

1. 앵커연구교수 : 앵커사업단에 소속되어 사업관리, 연구 과제 및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개정 2026.8.5.)
2. 앵커전임연구원 : 앵커사업단에 소속되어 사업관리, 연구 과제를 담당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6.8.5.)
3. 앵커객원연구원 : 타 기관이나 산업체 등에 재직 중인 자로 앵커사업단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개정 2026.8.5.)

제4조(임용자격)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의 임용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8.5.)

제5조(복무)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8.5.)

제6조(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은 앵커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6.8.5.)

②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 희망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앵커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5.)

1. 이력서 1부
2. 최종학위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앵커사업단장 또는 앵커사업단 각 본부장의 추천서 1부(개정 2026.8.5.)

5. 연구참여 실적 및 연구수행 계획서 각 1부

③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6.8.5.)

④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을 재임용할 경우 앵커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제2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연구참여 실적 및 연구수행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5.)

⑤ 앵커사업 종료시 임용이 종료된다.(개정 2026.8.5.)

제7조(처우) ① 앵커연구교수·앵커연구원의 보수는 앵커사업비로 충당한다.(개정 2026.8.5.)

② 앵커연구교수·앵커전임연구원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8.5.)

③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역할 및 활용) ① 앵커연구교수는 연구를 전담하되, 본교 강의 시 「강사임용 규정」을 따르며, 최대 2강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8.5.)

② 타 기관으로의 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439, 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 「연구교수·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된 앵커사업단 연구교수·연구원은 이 특별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8.5.)

부칙 (기획예산팀-2038, 2026. 08. 05.)

이 규정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임용 및 재임용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연구교수	①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산업체나 기관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산업체나 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③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산업체나 기관 경력 20년 이상인 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①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학사학위 소지자로 산업체나 기관 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관이라 함은 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인정되는 산업체나 기관은 종사자 5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의 우수한 연구 경력과 실적이 증빙될 때는 50인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